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12.(수) 12:00 (2025. 3. 13.(목) 조간)

“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”

-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
-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

고용노동부는 **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**를 **운영**('24.7월 한시)하여 **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**를 **대상**으로 **근로감독을 실시**('24. 9. ~ 11.)한 결과를 발표했다.

감독 결과, 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, 복지포인트 등 **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**하여 **즉시 시정 명령**했다.

차별 유형으로는 **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** 나타났고, 그 외 복지포인트, 경조금,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.

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. 해당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(연 210만원), 경조금(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)을 지급하나, **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(연 160여만원) 지급하고,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천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**하고 있었다. 또한, **기간제근로자 155명**에게 **퇴직급여 5천만원**을 **적게 지급**한 법 위반도 있었다.

이 외에도 샐러드를 제조·납품하는 기업은(300인 이상)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·성과금을 지급하면서, **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,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백만원을 차별**하고 있었다.

차별적 처우 등 **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**하도록 조치했고, **현장의 인식·관행 개선**을 위해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**차별 개선 컨설팅**('24년 353개소)**도 병행**했다.

김문수 장관은 “노동시장의 **양극화 타개**를 위해서는 **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**받아야 한다”라면서 “**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**을 **지속**하는 한편, 컨설팅 등을 통해 **현장의 인식**과 **관행 개선**도 **지속**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보경 (044-202-7574)
			주무관	황혜선 (044-202-757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감독 결과 주요 내용**

□ 감독 개요

○ **(대상)** 차별 익명신고센터('24. 7. 한시 운영)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

○ **(내용)** 제보된 비정규직 **차별적 처우 내용**을 **집중 점검**,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**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**('24. 9. ~ 11.)

□ 감독 결과

○ **(전체 위반 현황)** 20개소 중 **16개소**의 **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**

전체 위반		차별적 처우		금품 미지급		그 외	
사업장 수	적발 건수	사업장 수	적발 건수	사업장 수	적발 건수	사업장 수	적발 건수
16개소	**60건**	7개소	8건	9개소	21건	14개소	31건

○ **(차별적 처우)** 7개소,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☞ **583명, 356백만원**

① **(A사)**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**복지포인트**(연 210만원), **창립기념일 수당**(30만원), **경조금**을 지급하나,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**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** ☞ **259백만원〈409명〉**

② **(B사)** 건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**명절상여금**을 지급하나,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~60만원 지급하여 **정규직보다 적게 지급** ☞ **39백만원〈62명〉**

③ **(C사)**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(주 40h)에게는 **명절상여금**(기본급의 100%)을 지급하나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**단시간 근로자(주 15~25h) 근로자에게는 미지급** ☞ **2백만원〈7명〉**

-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%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나, 생산직 **파견근로자**에게는 11만원~81만원을 지급하여 **직접고용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** ☞ **27백만원〈47명〉**

○ **(금품 미지급)** 9개소, 21건의 금품* 미지급 적발 ☞ **502명, 136백만원**

* ▲최저임금 2개소, 1백만원, ▲연차수당 5개소, 40백만원, ▲시간외수당 6개소, 31백만원 ▲퇴직급여 3개소, 62백만원

○ **(기타)** 그 외 14개소, 31건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일부 누락, 근로시간 위반 등 적발